# 조합업무 관련 '질의회신' (2)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. 조합원사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여 '질의회신' 코너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

## 8. 선급금공동관리 질의(공동관리 대상금액) [대전300-141 (2011, 3, 24)]

#### 질 의 요 지

1.동일공사에 보증채권자가 다수인 공동도급 건으로 보증채권자의 선급금 안분비율로 각각 보 증서가 발급될 경우 공동관리 대상금액에 합산 적용하는지 여부

- 2. A등급. 공사금액 10억원. 선급금보증 1차분 3억원을 기존 발급했던 조합원이 2차분으로 2 억원을 신청하여 공동관리 대상금액에 해당될 경우 (단. 1차분 미정산)
  - 선급금 수령비율은?
  - 공동관리 비율과 그 금액은?
- 3. 질의 2에서 1차분 발급이 공동관리제도 시행일 이전이고 2차분 발급이 시행일 이후일 경우 곳돗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
#### 회 신 내 용 [업무300-78 (2011, 3, 25)]

- 1. 질의 1의 경우 1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이 당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조합원 1인에게 하도급한 경 우에는 공동수급인 각각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 된 경우 공동관리 대상에 적용됩니다.
- 2. 질의 2의 경우는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선급금 수령비율은 기지급된 선급금 중 미정산 선급금 액과 추가 보증에 해당되는 선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선급금 수령비율은 50%를 적용하여야 합니다.
- 3. 질의 3의 경우 선급금 수령비율 산정 시 공동관리제도 시행 전에 발급된 선급금보증에 대한 미정산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며. 제도시행 이후 추가 보증에 의하여 지급되는 선급금액을 기준으로 선급 금 수령비율을 산정하므로 귀 지점 질의의 경우는 공동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 9. 선급금공동관리 조합원 건의사항 [대전300-40 (2011, 1, 28)]

#### 질 의 요 지

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은 담보목적에 충족된다면 그에 상응하 는 이자를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?

#### 회 신 내 용 [업무 300-21 (2011, 1, 31)]

조합원의 선급금 수령 증가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손실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조합원이 수령한 선급금 중 일부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는 공동관리 제도 시행. 담보로 현금을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자도 지급하고 있 지 않으며, 선급금공동관리 제도는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, 조 합 보증수수료가 저렴한 점과 조합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을 보전하고 보증기관 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# 10. 외국인 대표자 약정체결 관련 질의 [광주300-548 (2007, 6, 29)]

### 질 의 요 지

- 1. 약정인 대표자가 외국인으로서 조합에 보증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직접 서명할 경우 약 정체결 여부
- 2.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한 한도거래채무약정서로의 약정체결 가능여부

#### 회 신 내 용 [업무 300-157 (2007, 7, 9)]

- 1. 한도거래용채무약정 연대보증인은 보증업무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규정하는 적격여부에 따라 국내 대표자의 약정체결 방법과 동일합니다.
- 2 영문 한도거래용채무약정체결 시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국문에 의한 조합서식을 이 용, 약정체결

## 11. 한도초과수탁금에 대한 질의 [감사080-27 (2007, 5, 31)]

#### 질 의 요 지

- 1 보증하도가 부족하여 부족하 금액만큼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, 그 현금에 대하여 약 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
- 2. 담보로 제공한 현금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기한이 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에 대한 대책은

## 회 신 내 용

[업무300-136 (2007, 6, 12)]

- 1.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한 조합원이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로 현 금을 수탁하여 보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업무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, 개별거래용채무약정을 체 결하여야 하며,
- 2 담보로 제공된 현금을 반환 시에는 보증업무세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, 당해 보증이 해제된 후 에 담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
# 12. 고압가스설비 안전검사용역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[순천 300-130 (1999. 6. 16)]

## 질 의 요 지

"고압가스설비 안전검사용역" 사업의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

# 회 신 내 용

[업무312-220 (1999, 6, 28)]

"고압가스설비안전검사"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행할 수 있는 용역사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 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조합의 보증대상 사업이 아님을 회신합니다.

# 13. 약정서와 공사계약서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보증서 발급 질의 [충정로330-282 (2000, 8, 9)]

#### 질 의 요 지

- 1.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가 "갑"과 "을"이 있는 경우에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"갑"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서의 발급신청은 우리조합과 한도 거래용채무약정거래를 체결한 동사의 각자 대표자 중 "을"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
- 2. 동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계약보증서 상에 A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계약상대자인 각자 대표자 "갑" 또는 우리조합과 보증 등 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용채무약 정서 상의 각자대표자인 "을" 중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- 3. 우리지점 의견

A주식회사가 우리조합과의 보증등 업무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용채무약정체결은 각자대표 "갑"과 "을" 중 "을"로,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은 각자 대표인 "갑"과 "을" 중 "갑"으로 체결하고, 동공사 계약 보증서 발급 신청은 우리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체결자인 "을"의 명의신청한 경우에 있어 동사의 정관 상에 각자 대표자의 대표권제한사항으로 위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상의 상대자인 법인 대표자의 명의는 "갑"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계약보증서 상의 대표자를 "을"의 명의로 계약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

# 회 신 내 용 [업무300-193 (2000. 8. 23)]

위의 질의는 귀 지점 의견대로 조치하기 바랍니다.

# 14. 보증기간 경과 후 추가보증서 발급 질의 [대구300-429 (1999. 11, 16)]

# 질 의 요 지

공사가 준공된 이후 발주처로부터 물가연동제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원·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변경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, 증액분에 대한 추가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조합이 추가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, 또는 발급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?

## 회 신 내 용

# [업무300-193 (2000, 8, 23)]

- 1. 계약보증은 조합원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발생 될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공사는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므로 물가연동제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보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.
- 2. 다만,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행정처리 절차상 부득이하게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첫에 의하여 발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보증서 발급일 자체를 소급할 수 없음을 회신한 니다

## 15. 유지보수공사 및 단가계약의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[인천200-343 (1999, 10, 22)]

#### 질 의 요 지

- 1. 발전설비(배관/제관)등의 유지보수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시설물유지관 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- 2.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

# 회 신 내 용

# [업무312-360 (1999, 10, 30)]

- 1. "건설공사"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물론 당해 시설물의 유지·보수 공사까지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공사내용(기존배관시설의 유지·보수작업, 배관의 신설 및 교체작업, 밸브류 신설 및 교체작업 등)은 건설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합 니다
- 2. "단가계약"이라 함은 공사량의 단위당 가격(단가)에 예정 총공사량을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 고 총공사기간 내 일정기간 공사를 부분적으로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 로서, 조합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타 계약보증 과 동일하게 조합이 보증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.